

한국 치위생학 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

김지연[†] · 김영숙^{1†} · 정순희^{2*} · 신제원^{3*}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재)치위생교육평가원 객원연구원 · ¹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한국치위생교육평가원 추진위원 · ²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한국치위생교육평가원 부위원장 · ³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재)치위생교육평가원 원장

The necessity for the Korean Dental Hygiene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Ji-Youn Kim[†] · Young-Sook Kim^{1†} · Soon-Hee Jung^{2*} · Je-Won Shin^{3*}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Visiting researcher,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College, Korean Institute of Dental Hygienist Education and Evaluation · ²Vice-President,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Korean Institute of Dental Hygienist Education and Evaluation · ³Professor and Chair,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President,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

*Corresponding Authors: Soon-Hee Jung, 136-55, J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860, Korea; Tel: +82-2-236-0914, Fax: +82-2-236-0915; E-mail : jzw210@naver.com

Je-Won Shin, Department of Oral Anatomy and Developmental Biology,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1 Heo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 +82-2-961-0568, Fax : +82-2-960-1747; E-mail : shinjw@khu.ac.kr

Received: 5 August 2014; Revised: 28 November 2014; Accepted: 8 December 2014

ABSTRACT

The increasing cross-border mobility of dental school or dental hygiene students, educators, practitioners, programs and providers takes challenges for existing national quality assurance and accreditation frameworks and bodies, as well as for the systems for recognizing foreign qualifications. The new dental hygiene accredit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encourage the improvement of dental hygiene programs, to ensur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most of all,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ly compatible system of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The accreditation procedure takes 1 year to complete. The result of the accreditation is released after evaluation via self-study report, site visit, preliminary draft report, responses from the institution and the results from the conciliation and review committees. The result from the accreditation procedure is either 'accreditation' or 'no accreditation'. Accredited schools receive one of several statuses following the evaluation. These are next general review, interim report and interim visit or suspension. Dental healthcare quality is not improved instantaneously, but instead gradually through continuous communication within the dental field. For this accreditation system to be successful, the following are essential: the accreditation agency should adopt hygiene education accreditation; it needs to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and managed efficiently; the autonomy and regulations surrounding the system need to be balanced; the professionalism of the system is ensured; and the dental field which includes not only dental program, but also hygiene program, needs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Key Words: dental hygiene accreditation, the quality of education

색인: 교육의 질, 치위생학 평가인증

서론

국제화에 더불어 치위생(학)과 학생, 교육자, 치과위생사, 대학 프로그램 등 의료 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존의 국가 질 보장 및 인증절차와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의 인증요건 또한 충족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치위생 교육평가인증제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국가

[†]공동 제1저자 / *공동 교신저자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 본 논문은 교육부 지원을 받아 수행함.

Copyright©2014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면허를 취득한 후 실무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치과의료 직무를 수행할 때 전문직으로서의 실무 역량을 키우는 표준 교육과정과 이를 지원하는 운영체계에 대한 질 보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평가는 관련 평가기관이 주관이 되어 상호 동등한 입장과 지위에서 평가하는 동료평가(peer assessment) 방식으로 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부여하는 전문적인 평가활동이다¹⁾. 또한 인증을 위한 평가의 목적은 평가를 통해 인증 혹은 불인증으로 판정한 결과에 목적을 두지 않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격상하고 유지,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평가인증기관에서 만든 인증기준(standards)을 사용하여 자체 평가(self-review)와 동료평가를 통해 각자가 평등하게 책임을 지는 합의 절차를 거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질 개선(Continuing Quality Improvement)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받은 대학의 졸업생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성취하였음을 공개적으로 보장(Competency-based Assurance) 받게 된다²⁾.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의 책무성과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정부가 법규를 제정하고^{3,4)}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방법이 진행되고 있다⁵⁻⁸⁾. 예를 들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학평가 사업을 위임받아 1994년부터 대학종합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학교평가 인정제를, 1999년부터는 대학의 학부제 도입에 따라 학문분야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에서의 대학관련 평가는 4년제 대학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의 경우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평가업무를 주도하여 왔다. 미국의 경우도 시사 주간지 U.S News & World Report와 같은 형태의 국내 언론사 주도의 대학평가 등이 출현하고 있다.⁹⁾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별 평가인증제와는 별도로 학과평가를 받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간호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과평가인증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간자율 평가기구를 설립하고 있다.¹⁰⁾

정부에서도 민간평가기관의 설립을 장려하면서 학문분야의 평가기관에 대한 기관인증 등을 통하여 이들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민간평가기관으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교육평가원 등 그 외 다수의 평가원들이 학문분야평가를 위한 민간평가기관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평가기관이 앞으로도 추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¹¹⁾

최근 치위생(학) 교육기관이 국민적 염원과 고등교육의

대중화 정책에 따라 급격한 양적성장이 이뤄졌고 더욱이 4년제와 3년제로 나뉘어 주어진 인적, 물적, 재정적 조건 속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나 개별대학이 사회가 요구하는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지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이었다. 이렇듯 교육의 질적 관리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치과위생사를 배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왔다^{12,13)}.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평가인증제의 해외사례와 국내 평가기관의 현황을 살피고 분석하여 치위생학 평가인증제의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1. 평가인증 방법

효율적으로 평가인증제를 시행 하려면 무엇을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인증의 타당성과 신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역량중심 인증체제를 구축하여 평가기준을 만들고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평가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치의학 교육 기관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치의학교육의 질 관리와 보장을 위해 노력한 치의학교육평가원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치위생 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2.1. 역량중심 인증체제 구축

먼저 환자 중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의 변화를 자극하고, 치과의료와 의료인력의 질적 증진 및 치과의료 행위의 최소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치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을 규정하고 이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역량(competency)이란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의 통합적인 능력이며 전문 직업 정신, 윤리적 가치와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 등을 포괄한다. 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은 아래와 같은 7영역과 59개의 세부역량 기준이 있다⁷⁾.

- 1영역: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및 수행능력
- 2영역: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자기개발능력
- 3영역: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업무 관련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 4영역: 치의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5영역: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파악하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할 수 있는 능력

- 6영역: 구강 및 악안면 영역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
- 7영역: 치과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2.2. 인증평가 운영 절차와 방법

치평원의 인증평가 절차는 인증평가 시행 계획, 자체평가, 방문평가 실시, 조율 및 판정으로 구분되며<Fig. 1>, 이는 [인증평가 인증규정]과 [인증평가 표준절차 지침서]에서 정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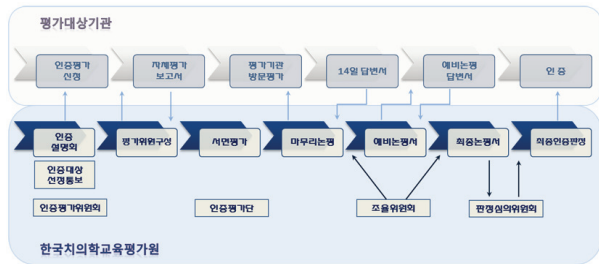


Fig. 1. The accreditation procedure of KIDEE

1) 자체평가연구

평가대상이 되는 대학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인증평가 시행 절차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활동으로 재정, 행정실태 및 향후 발전계획부터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한다.

2) 자체평가연구 절차

자체평가연구의 준비: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구성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 자체평가 연구위원회 구성과 자체평가 연구계획을 수립한다.

자체평가연구의 실시: 연구위원회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체평가 설명회를 실시한 후 자체평가연구 지침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자체평가연구의 결과보고서 작성: 대학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수집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각 평가영역별로 수집한 자료를 위원회가 서식에 맞게 작성한 후 수정 및 보완하고 완성된 자체평가보고서는 평가원 사무국에 제출한다.

자체평가연구 결과의 활용: 평가원의 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관계자에게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3) 서면평가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의 기술을 통해 교육목적 달성에 적합한 제도를 갖추고 합리적이며 타당하게 운영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방문평가

치과대학(원)의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으로 감사나 실사가 아니다.

5) 조율 및 판정

인증평가단은 마무리논평서를 기초로 하여 피평가기관의 두 차례에 걸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최종논평서를 작성한다. 공정한 인증평가를 위하여 치평원은 조율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평가단 간 기준 적용의 편차를 최소화 하고 판정심의위원회는 최종논평서를 검토·심의하고 인증평가단이 제출한 판정의견서에 대하여 판정·승인하고 판정결과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한다.

2.3. 인증평가 결과

타당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평가-인증을 통해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생은 취업기회가 확대되며 학생은 학문분야별 자격 취득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 역량이 함양되고 졸업 후 근무하게 될 병·의원은 전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졸업생을 채용하여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결국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해 환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국가적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3. 치위생교육 평가인증제도

3.1. 치위생교육인증평가 인증기준

치위생교육인증평가의 목적은 치위생 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치위생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교육 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치위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3·4년제 전문학사학위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위생(학)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6개영역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영역 : 비전 및 운영체계
- 2영역 : 교육과정
- 3영역 : 교육성과
- 4영역 : 학생
- 5영역 : 교수
- 6영역 : 행·재정 및 시설 설비

3.2. 인증평가 절차

인증평가 절차는 준비, 평가, 정리 등 크게 3단계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간 업무 기획 및 사전 준비

인증평가 업무의 기획과 결과 정리까지의 일정은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따라서 희망대학의 신청을 받아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통지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업무에 관한 계획은 인증신청 전에 1년 단위로 확정하여 진행한다.

인증사업의 연간 계획과 진행에 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증을 받을 교육기관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는다. 인증신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워크숍을 시행하여 인증에 필요한 제반서식, 일정과 절차 그리고 준비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2) 교육기관의 자체 평가

평가절차에 있어 대학별 자체 평가 과정은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대학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평가기준에 비추어 도달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평가원은 피평가대학의 자체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지침'을 배부하며 평가과정 중에 질문과 자문에 충실히 응한다. 이후 각 대학은 자체평가기획위원회 및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편람에 기초하여 대학별 자체평가연구를 수행하고 자체평가보고서를 지정된 제출일까지 제출한다.

3) 서면 평가

서면평가는 대학에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 및 첨부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평가자는 서면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전반적인 현황 및 항목별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확인한다.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 근거와 함께 기록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가 미흡할 경우 방문평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방문평가

방문평가는 1평가단 1일의 원칙으로 진행하며 방문일정은 사전에 대학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대학의 협조사항을 미리 공지한다. 방문평가는 서면평가에서 확인하기 어려웠거나 충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대학의 자체평가위원, 교수, 현장실습지도자, 학생, 행정가 및 재단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대학의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하고 각 대학의 상황과 여건을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

5) 인증평가 결과 판정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평가단의 최종판정을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6) 결과 통보 및 발표

이사회 심의·의결된 결과는 피평가대학으로 통보되고 이의 신청과정을 거쳐 최종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피평가대학은 평가결과를 판정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평가원 이사회에서 재심의하도록 안건을 제안하고 그 결과(인증평가논평서, 인증판정표)를 피평가대학에 최종 통보한다.

평가결과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3.3. 인증평가 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는 객관적인 진단과 점검을 통해 교육부의 대학 지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각 대학의 발전계획을 견인할 수 있다. 최종 평가 분석 결과를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평가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대학임을 홍보할 수 있다.

4. 국·내외 인증기구의 동향

시장개방과 국제적 이동이 급증되어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2005년 12월 UNESCO/OECD는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Cross-Border Higher Education)」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정부는 국경 없는 고등교육(CBHE)의 질 보증을 위한 포괄적 인증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간 고등교육 교류를 위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수준의 동질성을 확보하며, 외부 질 보증 기관은 교육 질 보장과 평가와 관련된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고등교육 질 보증관련 국제적 표준을 적극 수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¹⁴⁾. 평가인증체의 국제적 경향은 대학교육의 내부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및 외부 질 보증 평가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는 자격취득 조건과 연계되며 인증의 획득은 국내외 학점교류, 학위 및 취득, 자격증 상호인정의 전제 조건이 되므로 외부 평가인증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결과활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치과위생학을 포함한 치의학 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대한 국제 치과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과 동남아에서는 EU와 ASEAN 참여국가들 간의 인력교류 자유화(EU-시행, ASEAN-시행 준비 중)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각 ADEE와 SEAAD를 중심으로 EU와 ASEAN 역내 치의학 교육기관의 교육인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북미 대륙의 국가들(미국, 캐나다)은 이미 미국 ADA의 CODA가 주축이 되어 ADEA 소속 북미 치의학교육기관들 간의 치의학교육 상호인증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15,16)}. 2007년 최초로 개최된 Global Congress on Dental Education에서 치의학교육의 표준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증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가 없었던 국가들 간에도 인증협의체의 구성 및 교

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마침내 범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치의학교육인증평가와 면허관련 공식협의체인 International Society of Dental Regulators(ISDR)¹⁷⁾가 2014년 9월 8일 영국 런던에서 창립되었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13개국 및 20개 이상의 지역(jurisdictions)이 참가하였으며 이때 치평원은 Executive Committee(집행위원회)에 참가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간 협약에 따른 상호 인력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의 인증은 국제간 인력교류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국내 평가인증시스템은 정부(교육부)로부터 인정(Recognition) 받은 평가원이 프로그램(학문분야)을 평가·인증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한다. 그 결과보고서는 대학지원에 활용된다(Fig. 2).

치위생학을 포함한 프로그램 인증평가는 고등교육법 제 11조2(평가)[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4.18.]에 규정되어 있다³⁾. 그 내용은 대학자체평가 및 결과공시 의무화, 전문인정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 전문인정기관에 대한 교육부 지정, 인증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정 2008.12.17 대통령령 제21163호, 시행일 2009.1.1.]과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제정 2008.12.18.부령 제00021호, 시행일 2009. 1. 1.]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의료인 국가시험 자격을 규정한 의료법 제5조[법률 제11252호, 2012. 2. 1, 일부개정]에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 한해 의료인 면허 자격을 부여하는 법이 개정되어 공포 후 5년 유예하여 2017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⁴⁾.

치평원⁵⁾은 2007년 12월에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치의학교육의 질 보장, 국민 구강건강에 대한 책무성 및 치의학교육의 국제적인 상호인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치평원은 2년간의 예비평가를 거친 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국내 11개 치과대학(원)의 치의학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1주기 인증평가를 완료하였다. 1주기 인증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제도가 국제적으로 호환 가능한 평가 및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과 진료의 질을 보장하며, 치과대학의 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외 보건의료계 평가기구로 간호교육평가원⁶⁾은 간호전문직의 자율조정기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간호사 양성 및 간호서비스의 질적 보장을 목적으로 2004년 2월에 법인으로 설립되어 간호교육 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의학교육평가원⁷⁾은 2004년 2월에 법인으로 설립되어 의과대학 교육 평가인증을 위한 국제기준 준수 및 국제적 평가제도 도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의학교육평가원⁸⁾은 2004년 10월에 법인이 설립되어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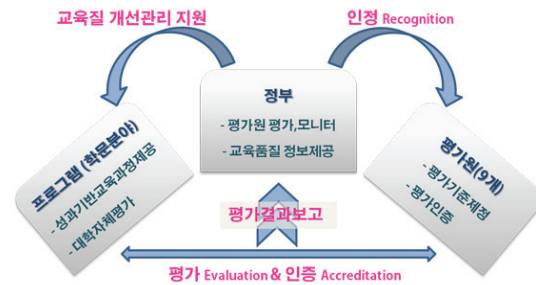


Fig. 2. Korean accreditation system

결론

치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치위생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치의학 영역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인증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11,18)}. 이 인증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국내외 인증기구의 인증기준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구성원의 요구와 전문 학회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적 동등성을 보장하는 인증기준 제정과 공표를 통해 효과적인 인증활동을 경험하고 정착 시켜야 한다. 치위생학 교육, 연구의 활성화 및 치평원을 비롯한 국내 인증평가원들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다.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홍보와 졸업생에 대한 혜택과 사회적 지원을 증대하고 국가 간 치과위생사 교류에서도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재정 자립, 조직의 효율적 운영, 평가절차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 공인된 평가·인증기관으로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평가기구로서의 경쟁력 또한 확보하여야 한다. 국제 치의학교육 활동 강화를 위해 치평원과 협력하여 치위생학과 치위생학 인증평가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CODA, 영국GDC, 캐나다CDC, 호주ADC 등 해외 인증평가기구와의 교류 확대 및 ISDR국제기구 회원국 대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치위생학 평가인증제의 발전을 이룬다면 국가적으로 치위생학교육의 표준화를 이룩하고,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평가기준과 준거를 개발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이룩하며, 치위생(학)과 스스로 자체평가를 통해 대학의 장점과 가치를 발견하고 단점을 개선하도록 하며, 끝으로 치위생학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조인과 협력을 제공하여 치위생학 교육기관의 다양화, 특성화, 효율화를 이룩함으로써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치위생(학) 교육과정이 국내외적으로 역량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될 것이다.

References

1. Bandaranayake RC. Editorial. Institutional accreditation: a long overdue process. Bulletin of the Kuwait institute for medical specialization 2007; 6: 51-4.

2. Chang HS, Lee SH. Establishment, present condition, and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new Korean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J Korean Med Sci* 2012; 27: S61-9.
3. Korean law center. the law, higher education act section 2 of Article 11[Internet]. [cited 2014 Aug 18].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20%EC%A0%9C2%EC%A1%B0#liBgcolor0>.
4. Korean law center. the law,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Internet]. [cited 2014 Aug 18].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D%98%EB%A3%8C%EB%B2%95#liBgcolor6>.
5.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 Accreditation[Internet]. [cited 2014 Aug 18]. Available from: <http://www.kidee.org>.
6.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Internet]. [cited 2014 Aug 18]. Available from: <http://www.kabon.or.kr>.
7.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Medical Education Accreditation[Internet]. [cited 2014 Aug 18]. Available from: <http://www.kimee.or.kr/new2009>.
8.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 Evaluation. Accreditation[Internet]. [cited 2014 Aug 18]. Available from: <http://www.ikmee.or.kr>.
9. George DK, Peter TE. The state of learning outcomes assessment in the United States. *Higher Education management and Policy* 2010; 22(1): 9-28.
10.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Handbook on Evaluation in Korean Higher Education.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14; 51-79.
11. Shin JW, Kim YS. The present condition, and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Korean dental(hygiene)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Abstract of the 36th general academic symposium of Korean dental hygiene 2014; 61-5.
12. Won BY, Jang GW, Hwang MY, Kim SA, Jang JH. Development of Korean standard dental hygiene curriculum proposal.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1): 1-12.
13. Won BY, Hwang MY, Chun SY. The actual condition of operating dental hygiene curriculum between Korea and America. *J Korean Soc Dent Hyg* 2010; 10(6): 1061-71.
14. Eaton JS. An overview of U.S. accreditation.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2011.
15. South East Asia Association for Dental Education (SEAADE). About us, Objectives[Internet]. [cited 2014 Aug 18]. Available from: <http://www.seaade.org/>.
16.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CODA). Accreditation [Internet]. [cited 2014 Aug 18]. Available from: <http://www.ada.org/coda>.
17. International Society of Dental Regulators(ISDR). Events,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verview[Internet]. [cited 2014 Aug 18]. Available from: <http://isdronline.org/>.
18. KIDEE.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for dental education accreditation. *Kor J Dent Educ* 2009; 2(1): 5-23.